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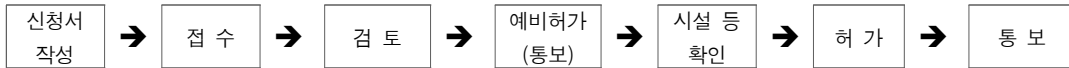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기본 5,000원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